

수의견적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개정면 아동리 동정마을 급배수관 포설공사

나. 위 치 : 개정면 아동리 124-3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배수관 포설(D50) L=224m 등

라. 총공사금액 : 금44,877,000원

1) 추정가격 : 금33,550,000원, 부가세 : 금3,355,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금7,972,000원

2) 기초금액 : 금36,905,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구분 : 신설공사/전문공사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금) 12:00	2026. 10. 8.(수) 12:00	2026. 10. 8.(수)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나.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다. 본건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라.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마.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가. 예정가격의 작성 :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천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라.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 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 나. 설계도서는 군산시청 수도과 급수계(☎063-454-540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평일 : 09:30~17:00까지, 토.일요일 및 법정 국경일은 열람 제외)

※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해당사항 있는 경우)

-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도급계약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미지급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의 전가.부담, 하도급대금의 감액,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미반영하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바. 개별법령에서 단서 조항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후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와 관련,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에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오니, 원도급자는 하도급 체결 시 70%까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 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 있을 경우)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가.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적용대상공사 :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의 공사)

10.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약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 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318,564	343,980	454,493	45,198	-	474,893	-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 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 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 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에 따릅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군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1)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2)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3)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군산시 거주자(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카. 공개견적 안내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파.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과 수도행정계(063-454-5352 김도희), 공사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과 급수계(063-454-5404 박은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